

보도 일시	2022. 9. 29.(목) 조간 2022. 9. 28.(수) 11:00	배포 일시	2022. 9. 28.(수) 06:00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이민영 (044-200-5565)

가을철 성어기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 단속한다

- 10월 한달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해상 동시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 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하여,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횃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며 “어업인들도 수산관계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어업자원정책관실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이민영 (044-200-5565)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책임자	과 장	김형덕 (051-410-1005)
		담당자	주무관	정윤희 (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책임자	과 장	손영우 (061-240-7903)
		담당자	주무관	최재봉 (061-240-7971)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책임자	과 장	강원진 (064-780-2421)
		담당자	주무관	김병수 (064-780-2422)



◆ 가을철 성어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 실시

□ 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22. 10. 1. ~ 10. 31. / 1개월간
- 참여기관 : (주관)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참여)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광역·기초), 수협
(협조)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 단속방법 : 육·해상 합동단속반 편성·운영(국가·지방어업지도선 49여척)
- 단속대상 :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금어기·금지체장, 어구·어법(공조조업 등), 허가제한 및 어선법 위반 등

□ 중점 단속사항

< 국내어선 >

- (무허가·무면허) 무허가(새우사각틀 등),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조업 및 무면허 등 집중 단속
- (조업구역) 중대형 저인망어선 및 기선권현망 등의 조업구역 위반
- (어구·어법) 공조조업, 자망·통발 초과부설 및 허가 외 어구사용 등
- (금지기간·체장) 금어기·금지체장(대게 암컷·꽃게 체장미달) 및 어린고기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
- (허가제한) 대형트롤(128도이동조업), 동해구중형트롤(선미경사로), 채낚기 (광력위반 등) 및 혼획관리 위반(근해안강망) 행위 등

< 외국어선 >

- (무허가·불법어구) 우리 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범장망 등) 부설 등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계 강화
- (중국어선관리) 서해 NLL 주변 불법조업, 집단저항 및 폭력행위 등 중대위반 단속 및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계인수 실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2022. 10. 1.~10. 31.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 및 국내·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집중단속 실시



중점단속대상

- 공 통 무허가·무면허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공조조업, 어란물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 동 해 안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128도 이동조업 등
- 서 해 안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제한 위반 등
- 남 해 안 불법어구, 혼획위반, 무허가 등 불법조업 집중단속
- 외국어선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위반
- * 3대 중대 불법어업(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단속기관

- 주 관 해양수산부
- 참 여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 협 조 법무부, 해양경찰청

신고 및 문의

대표전화 : 국번 없이 1588-5119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www.mof.go.kr
지방자치단체 : 불법어업 지도·단속 담당부서

동·서·남해어업관리단 • 부산 051-410-1030~3
• 목포 061-240-7970~3
• 제주 064-780-2421~4